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봉곡 및 도량지역의 대단위 주거지구 형성으로 인구 증가 및 소방관리 대상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청사, 관사 등)축조가 가능함으로 공유재산에 봉곡 119안전센터 신축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
 - 위 치 : 구미시 봉곡동 174-5번지
 - 규 모 : 대지 1,396.4m², 건축연면적 726m²(지상2층)
 - 토지매입비 : 9억9천만원(2006.11월)
 - 신축시기 : 2015. 8월경
 - 사 업 비 : 18억원(도비)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봉곡 및 도량지역의 대단위 주거지구 형성으로 인구 및 소방 대상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경상북도의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 건임.

○ 주요 내용은

-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
 - 위 치 : 구미시 봉곡동 174-5번지
 - 규 모 : 대지 1,396.4m², 건축연면적 726m²(지상2층)
 - 토지매입비 : 9억9천만원(2006.11월)
 - 신축시기 : 2015. 8월경
 - 사 업 비 : 18억원(도비)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봉곡동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 등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원평119안전센터 관할(원평,지산,도량,봉곡,부곡,선기,수점,양호동 일부)을 원평119안전센터(원평,지산,양호동 일부)와 봉곡 119안전센터(봉곡,도량,부곡,선기,수점동)으로 분할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봉곡·도량일대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재난방재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7]

1. ~ 10.(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